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본소)·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제목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침해자가 위 (파)목이 정하는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	
판결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이하 ‘(파)목’이라 하고, 다른 항목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등 참조). 이때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1)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

1. (파)목의 법적 성격 재확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임.
-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짐.
 -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 보호**
 -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유형을 규정하지 못한 점의 보완
 - 변화하는 거래관념의 적시 반영
- 따라서 (파)목은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임.

2. ‘성과 등’ 해당성과 무단사용 여부의 구별

- 특정 결과물이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와 침해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였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함.
- 보호대상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결과물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파)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3. 데이터와 데이터 조취수단의 개별 판단

-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이 사건 API를 각각 별도의 보호대상으로 판단함.
- 대법원은

- 리뷰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과 등’ 해당성을 인정
- API에 대해서는 ‘성과 등’ 해당성을 부정
- 하나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구성요소라도, 그 투자·노력, 경제적 가치 및 공공영역 해당 여부는 **구성요소별로 개별 판단하여야 함.**

4. 증명책임의 소재 명확화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함.
-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판례의 핵심 의의

- 경쟁관계나 서비스 외형의 유사성만으로는 (파)목의 무단사용을 인정할 수 없음.
- 주장자는 보호대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침해자가 그 성과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적 방식이나 통상적인 구성요소는, 구체적인 투자·노력 및 보호가치가 증명되지 않는 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사안개요

1.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 대학교 원서 접수, 입시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이하 ‘원고’
- 피고·반소원고
 - 대학교 리뷰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이하 ‘피고’

2. 업무협약 및 자료 제공

- 원고와 피고는 업무협약을 체결함.
- 피고는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을 제공함.
 - 피고가 수집·가공한 대학교 리뷰인 ‘**이 사건 리뷰 데이터**’
 - 피고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원고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인 ‘**이 사건 API**’
-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자에게 이 사건 리뷰 데이터를 제공함.

3. 원고 서비스 개발

- 원고는 이후 별도의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개발함.
 - 이를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여 원고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그 서비스를 통하여 리뷰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함.
 - 이를 ‘**제2 사용행위**’라 함.

4. 분쟁 발생

- 피고는 원고가 업무협약 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열람한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사용하여 원고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다음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타인 아이디어 부정사용
 - 같은 호 (파)목의 타인 성과 무단사용

5. 제1심

- 피고의 주위적·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서는
 - 피고가 반소 청구취지에서 주장한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함.

6. 원심

- 피고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
- 원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 피고의 반소 손해배상청구 중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본소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함.

(3) 법리

쟁점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법적 성격

1. 법리

- (파)목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임.
-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임.
-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임.
-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임.

2. 답안 활용 문장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개별적인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쟁점 2.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판단기준

1. 일반적인 판단 요소

-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2.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판단

-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다음에 따라 판단함.
 -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
 -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
- 위 요소를 기초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3. 공공영역 해당 여부

-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4. 답안 활용 문장

-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그 경제적 이익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쟁점 3.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사용의 판단기준

1. 종합적 고려 요소

-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는지
 -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
 - 그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이 공정한지
 -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는지
 -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2. 답안 활용 문장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사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경쟁관계,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시장에서의 대체가능성, 성과의 인지도 및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쟁점 4. (파)목 부정경쟁행위의 증명책임

1. 무단사용에 대한 증명책임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함.
-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성과 등' 해당성에 관한 주장·증명

- 특정 결과물이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
 - 그 투자나 노력의 정도
 - 해당 결과물이 갖는 명성·경제적 가치·고객흡인력
 - 해당 산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가치

3. 답안 활용 문장

-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침해자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쟁점 5. 이 사건 리뷰 데이터의 '성과 등' 해당 여부

1. 관련 사실

- 이 사건 리뷰 데이터는 피고가 피고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가공한 것임.
- 원심은 다음 사정을 고려함.
 - 투입된 노력이나 비용
 - 수집·가공 기간
 - 그로 인하여 갖게 된 명성과 경제적 가치
 - 고객흡인력
 -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2. 대법원 판단

- 이 사건 리뷰 데이터가 (파)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

3. 답안 활용 문장

- 상당한 비용과 노력 및 기간을 들여 수집·가공된 데이터가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및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쟁점 6. 이 사건 API의 '성과 등' 해당 여부

1.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API가 피고 서비스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 투입된 노력이나 비용, 기간이 상당하고
 - 그 구체적 내용이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방법

- 이 사건 API와 같은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조회 방법은 피고 서비스 이전부터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임.

3. 통상적인 구성요소

- 이 사건 API의 구체적인 입력 인자 및 출력 인자 등은
 - 일반적인 API에 포함되는 입력 인자 및 출력 인자와 크게 다르지 않고
 -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가지는 요소에 불과함.

4. 투자·노력에 관한 증명 부족

- 피고는 이 사건 API가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5. 원심 판단의 모순

- 원심은 (차)목 판단 부분에서는
 - 이 사건 API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려져 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 세부 내용은 다르게 정하더라도 무방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함.
- 그럼에도 (파)목 판단에서는 별다른 구체적 이유나 근거 없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6. 대법원 판단

- 이 사건 API의 내용은 일반적인 API와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API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요소에 불과하므로,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 판단에는
 - '성과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 필요한 심리 미진
 - 판결이유 모순
- 등의 잘못이 있음.

7. 답안 활용 문장

-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데이터 조회 방법이고, 구체적인 입력·출력 요소도 유사한 기능의 API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요소에 불과한 경우에는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7. 원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1.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원고가
 - 피고로부터 엑셀 형식으로 제공받거나
 - 이 사건 API를 통하여 열람한
-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하여 원고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와 제2 사용행위가 모두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2. 피고의 사용 증명 부족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사용하여 원고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함.
- 그러나 수많은 이 사건 리뷰 데이터 중 단 하나의 리뷰 데이터라도 원고가 개발한 서비스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3. 원고의 독자적 수집 주장 및 제출 증거

-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
 - 이 사건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함.
 - 그 과정에서 이 사건 API는 사용할 필요조차 없었음.
- 원고는 서비스를 출시한 2019. 4. 25. 무렵부터 2020. 1. 30.까지 네 차례의 이벤트를 통하여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함.

4. 원고의 기존 서비스 운영 경험

- 원고는
 - 2016년경부터 인터넷 강좌 리뷰 서비스를 운영하고
 - 2017년경부터 기업 리뷰 서비스를 운영함.
- 따라서 원고는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 관하여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큼.

5. 독자적 개발 가능성

- 원고가 개발한 서비스는 원고가 종전에 운영하던 기업 리뷰 서비스와 상당 부분 유사한 표현 방식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따라서 원고가 독자적인 기술력과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음.

6. 경쟁관계 및 혼동가능성

- 원고와 피고가 리뷰 서비스에서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음.

- 서비스의 외형이 비슷하여 서로 대체될 수 있음.
-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양자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 불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7. 대법원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 판단에는
 - (파)목 부정경쟁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 등의 잘못이 있음.

8. 답안 활용 문장

- 당사자들이 경쟁관계에 있고 양 서비스의 외형이 유사하여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호대상 성과의 실제 무단사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주장자는 구체적인 성과가 침해자의 서비스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쟁점 8. 항소심 심판범위와 소송종료

1. 관련 법리

- 원고의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더라도
 -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됨.
- 그러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 이심된 부분 중
 - 피고가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됨.
-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 그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 소송이 종료됨.

2. 이 사건 적용

- 제1심이 원고의 본소 중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함.
- 피고만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
- 원고는 소가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음.
- 따라서 제1심이 소를 각하한 부분은 더 이상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님.
- 해당 부분은 2023. 9. 7. 원심판결 선고로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됨.

3. 원심의 잘못

- 원심은 제1심이 소를 각하한 부분을 포함한 본소 청구 전부를 심판범위로 보아 판단함.
- 이는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4. 답안 활용 문장

-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더라도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불복신청의 한도로 제한되므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4) 원심법원 판단

※ 이 사건 원심은 특허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임.

1. (차)목 부정경쟁행위

- 원심은 원고가 (차)목의 타인 아이디어 부정사용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특히 이 사건 API에 관하여
 - 원고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 세부 내용은 달리 정하여도 무방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함.

2. 이 사건 리뷰 데이터

- 피고가 피고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가공한 것임.
- 투입된 노력이나 비용, 기간이 상당함.
- 리뷰 데이터가 명성과 경제적 가치 및 고객흡인력을 가짐.
-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일정한 비중과 경쟁력이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리뷰 데이터는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이 사건 API

- 피고가 피고 서비스를 위하여 제작한 것임.
- 투입된 노력이나 비용, 기간이 상당함.
- 그 구체적 내용이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API도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4. 원고의 사용행위

-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거나 API를 통하여 열람한 리뷰 데이터와 API를 사용하여 원고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인정함.
- 그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의한 무단사용**이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다음 행위가 모두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 제2 사용행위

5. 손해배상

- 피고의 반소상 손해배상청구 중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인용함.
- 원고의 본소에 대해서는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함.
-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5) 대법원 판단

1. 이 사건 리뷰 데이터

- 이 사건 리뷰 데이터는 피고가 피고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가공한 것임.
- 투입된 노력이나 비용, 기간,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시장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이 인정됨.
- **이 사건 리뷰 데이터가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법적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

2. 이 사건 API

- **이 사건 API와 같은 서버 저장 데이터 조회 방법은 피고 서비스 이전부터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임.**
- 구체적인 입력 인자와 출력 인자 등은 일반적인 API에 포함되는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가지는 요소에 불과함.
- 피고는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API는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에는
 - '성과 등'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 오해
 - 필요한 심리 미진
 - 판결이유 모순
- 등의 잘못이 있음.

3. 리뷰 데이터 및 API의 실제 사용

- 피고는 수많은 리뷰 데이터 중 단 하나의 리뷰 데이터라도 원고가 개발한 서비스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함.
- 원고는
 -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였고
 - 네 차례의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 경품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함.
- 원고는 종전부터 인터넷 강좌 및 기업 리뷰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므로 리뷰 서비스 관련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소지가 큼.
- 원고 서비스는 종전 원고의 기업 리뷰 서비스와 표현 방식과 구성이 상당 부분 유사함.
- 원고가 독자적인 기술력과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음.
- 양 당사자가 경쟁관계에 있고 서비스 외형이 유사하여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에는
 - (파)목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 증명책임
-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4. 항소심의 심판범위

- 제1심에서 소가 각하된 부분은 원고가 불복하지 않음.
- 해당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며, 2023. 9. 7.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됨.
- 원심이 그 부분까지 심판한 것은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6) 결론

1. 리뷰 데이터

- 대법원은 이 사건 리뷰 데이터가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법적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수긍함.

2. API

- 이 사건 API는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데이터 조회 방법이고, 그 세부 요소도 일반적인 API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요소에 불과하므로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무단사용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함.

- 원고가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개발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음.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API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4. 심판범위

- 제1심이 소를 각하한 부분은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소송종료**를 선언함.

5. 최종 주문

-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이 소를 각하한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을 파기함.
- 해당 부분의 소송은 2023. 9. 7. 원심판결 선고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소송종료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함.
-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7) 한줄 키워드 요약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는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침해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쟁점별 키워드

- (파)목의 성격
 -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
- 성과 등 판단
 - 명성·경제적 가치·고객흡인력·시장 내 비중과 경쟁력을 종합하여 판단
- 상당한 투자나 노력
 - 해당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공공영역
 -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 무단사용 판단
 - 경쟁관계·상거래 관행·시장대체 가능성·인지도·혼동가능성의 종합 고려
- 증명책임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사용의 증명책임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API
 - 업계에서 널리 알려지고 통상적으로 갖추는 API 요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 등'으로 보기 어려움
- 서비스 유사성
 - 경쟁관계와 서비스 외형의 유사성 또는 대체가능성만으로 실제 무단사용을 인정할 수 없음

(8) 추가 정리 포인트

* 아래 내용은 판결의 직접적인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사례형 답안 적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리한 것임.

1. 검토 순서

- 사례에서 (파)목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다음 순서로 검토함.

- 1) 보호대상으로 주장되는 '성과 등'의 구체적 특징
- 2)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
- 3) 그 경제적 이익이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지
- 4) 침해자가 해당 성과를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 5) 그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 6) 자신의 영업을 위한 무단사용인지
- 7) 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충족되었는지

2. 각 보호대상의 개별 판단

- 동일한 서비스에 포함된 요소라도 각각의 보호대상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에서는
 - 리뷰 데이터는 '성과 등'에 해당하였으나
 - API는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데이터, API, 서비스 구조 등 여러 대상을 포괄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각 대상을 구분하여 투자·노력과 보호가치를 판단하여야 함.**

3. 접근 가능성과 실제 사용의 구별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업무협약에 따라 리뷰 데이터와 API에 접근할 수 있었음.
- 그러나 피고는 단 하나의 리뷰 데이터라도 원고 서비스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함.
- 따라서 **보호대상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사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용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4. 독자적 개발 가능성

- 침해자로 지목된 자가 종전부터 유사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관련 기술력 및 데이터 처리 노하우를 보유한 사정은 독자적 개발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음.
- 자체 데이터 수집 경위와 관련 지출 자료도 독자적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기존 리뷰 서비스 운영 경험과 자체 이벤트를 통한 데이터 수집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 개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됨.

5. 혼동가능성

- 혼동가능성은 (파)목의 독립된 단일 요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님.
-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사용인지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 고려 요소 중 하나임.**
- 따라서 혼동가능성의 유무만으로 (파)목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경쟁관계·시장대체 가능성·상거래 관행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6. (차)목과 (파)목의 관계

- 동일한 대상이 (차)목과 (파)목에서 모두 문제될 수 있으나 각 조항의 성립요건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 다만 동일 대상의 공개성이나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는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설명할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가 필요함.
- 이 사건 원심은 API에 관하여
 - (차)목 판단에서는 보호가치가 낮다고 보면서
 - (파)목 판단에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았음.
- 대법원은 이를 판결이유의 모순으로 판단함.

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 본 판결은 API 일반이 모두 (파)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님.

- 이 사건 API가
 -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데이터 조회 방법이고
 - 세부 요소가 통상적인 API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 피고가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성과 등' 해당성이 부정된 것임.

8. 최종 답안 정리

-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해당성과 침해자의 실제 무단사용은 별개의 성립요건이다.
- 경쟁관계·서비스 외형의 유사성·시장대체 가능성만으로는 실제 무단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
-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침해자가 특정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실제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